

# 파트너사의 공정한 선정(등록)을 위한 실천사항

제정 2013. 05. 30

1차 개정 2013. 12. 30

2차 개정 2014. 03. 26

3차 개정 2014. 12. 30

4차 개정 2019. 07. 31

## I. 목 적

이 실천사항은 유한킴벌리주식회사(이하 '유한킴벌리')의 파트너사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II. 용어의 정의

### 1. 파트너사

“파트너사”라 함은 유한킴벌리의 제조위탁거래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 사업자도 포함한다.

### 2. 파트너사 풀(Pool)

유한킴벌리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·운용하는 파트너사 그룹을 의미한다.

### 3. 파트너사 선정

유한킴벌리의 파트너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.

### 4. 파트너사 운용

“파트너사 운용”이라 함은 유한킴벌리가 파트너사로 선정, 등록된 업체에 대한

거래개시 기회 부여, 등록취소 등 파트너사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

### III. 파트너사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

#### 1. 파트너사 선정 기준·절차 및 결과의 공개

##### ① 정책

가) 가격, 품질, 서비스 등 제반 사항을 점검,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가 선정되도록 한다.

나)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

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회사 웹사이트를 운영한다.

② 파트너사 선정의 결과는 파트너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, 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.

#### 2.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

유한킴벌리는 파트너사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.

#### 3.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
① 파트너사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으며, 세부 선정 기준 별 반영 비중을 적절히 배분한다.

<대표적인 선정기준>

-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
-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
-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
-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등

② 필요 시 파트너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.

③ 상시 파트너사 등록을 위해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가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다.

④ 유한킴벌리의 귀책사유로 파트너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

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.

- ⑤ 파트너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, 이하 같음)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.

#### 4.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

파트너사로 선정,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.

#### 5.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

유한킴벌리는 파트너사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.

#### 6.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

유한킴벌리는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.

#### 7.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
- ①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한다.

<대표적인 등록 취소 기준>

-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파트너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
- 부도, 휴업,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
-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-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
-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

- ② 파트너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,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유한킴벌리의 귀책사유로

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.

8. 유한킴벌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.

부 칙

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6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4월 1일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실천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실천사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